

## 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시설 공모

(재)부산문화재단은 누리과정과 차별되는 유아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실현하고자 『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운영 할 문화시설을 공모 합니다. 부산지역 기관 및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 공모개요

- 사업명: 2020년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공모명: 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시설 공모
  - 공모기간: 2020. 3. 6. (금) ~ 3. 30. (월) 17:00
  - 신청방법: 공모기간 내 신청서 작성 및 전자 공문 제출  
※단, 전자공문 발송이 불가능한 시설은 artsedu17@bscf.or.kr로 이메일 접수
  - 신청자격: 부산지역 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기반 시설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업무협력협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지원규모 : 총 2 ~ 3개 시설 / 1개 시설 당 60,000~90,000천원 지원  
※유아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포함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2에 의거, 국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사업자는 e-나라 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운영기간: 2020. 5. ~ 12.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 주 관: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 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 의: 문화교육팀 051-745-7284

# I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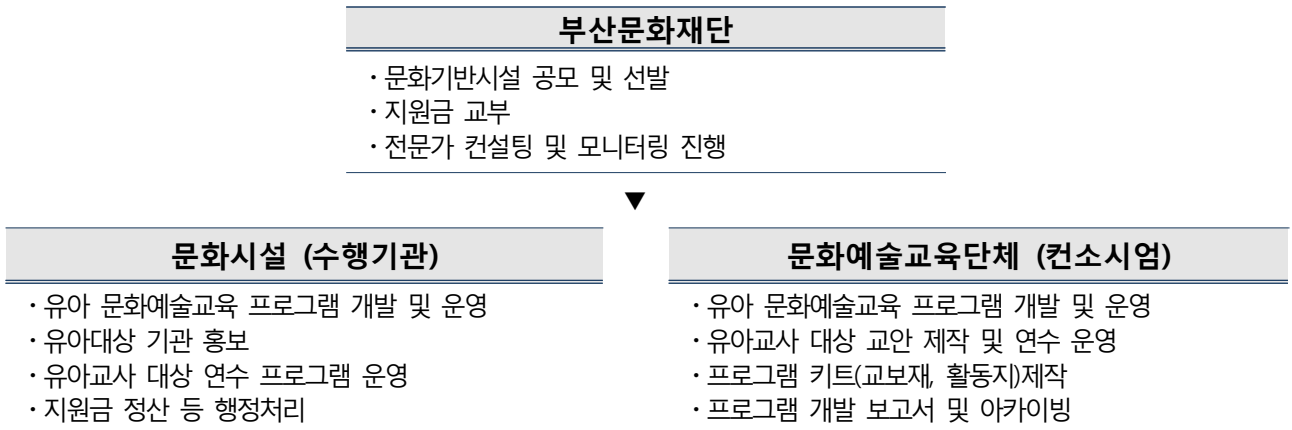
## 1. 개요

- 사업명: 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0. 5. ~ 12.
- 교육대상: 부산지역 영·유아교육기관의 만3~5세 유아 및 유아교사
  -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인가 받은 유치원
- 지원규모: 총 3개 시설 내외 / 1개 시설 당 60,000~90,000천원
  - ※ 유아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포함
- 지원자격: 부산지역 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기반 시설
  - ※ 사업기간 내 지속적으로 유아대상 교육 공간 및 제반사항을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시설
  - ※ 단, 아래 참고사항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우선지원

### <참고사항> 프로그램 운영 주체 선정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 가능한 문화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 ※ 공모 시 아래 내용 참고하여 지역별 문화시설의 공모 참여 자격여부 판단</li> <li>※ 문화시설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시설 등)</li> <li>■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및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등)</li> <li>■ 문학진흥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li> <li>■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li> <li>■ 기타 상위법 또는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록된 시설 중 유아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공간</li> </ul> </li> <li>■ 예술단체의 경우에도 공모지원 가능하나, <u>문화시설과 업무협약을 통한 컨소시엄 형태 필수</u> ※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업무협약 시 단체와 문화시설 공동책임 명기</li> </ul>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담당자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수업 참여를 위한 <b>안전 공간 확보 및 안전 계획 수립 (필수)</b></li> <li>■ 연중 <b>안전한 사업운영을 위한 대비책 마련(보험가입 등) (필수)</b></li> </ul>
신청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li> <li>■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특수·대안학교</li> <li>■ 정치, 종교 집단 및 학원 등 상업적 활동 중심의 영리 위주의 기반시설</li> </ul>

## 2. 운영체계 및 역할



## II 공모내용

###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가. 프로그램 개발진(연구진 및 강사진) 총 5~6인 구성

(※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우대)

구분	자격요건	주요 역할	비고	
<b>연구진</b>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력 5년 이상	- 유아 대상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외부전문인력
	유아교육전문가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력 5년 이상, 또는 현장교육경력 5년 이상	- 유아의 발달단계 및 유아의 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환경에 관한 검토 - 기존 유아교육과의 유사성·차별성 검토 진행	외부전문인력
	시설전문가	문화기반시설 내부 인력	- 문화기반시설의 고유한 장르 및 시설 특성에 대한 검토 진행	시설전문가 ※행정인력과 중복불가
<b>강사진</b>	연간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 유아 대상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운영 -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적용가능 여부 검토	2인 이상	

- 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유아교육전문가와와의 컨소시엄 필수 (※업무협약서 제출)
-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부터 교육강사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취지 및 실행에 대한 이해 도모
- 연구진들은 수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완성 및 피드백 제공을 해야 함.

## 나.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키트 개발

구분	구성 내용	
프로그램 구성	①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프로그램 수: 최소 1종 이상</li> <li>● 20명 내외의 아동 대상, 총 8회 이상 프로그램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수업 당 최대 3시간, 수업준비, 휴식시간 포함.</li> </ul> </li> <li>● 프로그램 운영 기준: 지역 내 영유아 교육기관 대상 15개소<sup>1)</sup> 이상, 방문형·체험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형 : 프로그램 강사진이 유아기관 방문</li> <li>- 체험형 : 유아가 문화기반시설에서 체험 (1회 이상 필수 운영)</li> </ul> </li> <li>●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누리과정 연계</li> <li>- 문화시설의 주요 콘텐츠와 연계, 예술장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전체 프로그램은 하나의 주제로 각 회 차가 연계성 있게 구성하되, 행사중심, 반복학습을 통한 단순 기능교육 지양</li> </ul> </li> </ul>
	② 유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5회<sup>2)</sup> 총 15시수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 (문화시설 공간 활용)</li> <li>● 1개소 당 지역 내 유아교사 15명 내외</li> <li>● 유아대상으로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유아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구성</li> <li>● 교사지도안 제작 및 배포</li> </ul>
키트개발 및 활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트(교육용 교보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모성 재료의 키트 지양</li> <li>- 기존 프로그램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재료 및 도구를 다각도로 활용</li> </ul> </li> <li>● 활동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형·체험형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활동지 개발</li> <li>- 유치원에서 프로그램 예비학습 및 후속 활동 지원을 위한 사전·사후 활동지 2종 개발</li> </ul> </li> </ul>	
프로그램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유아들의 반응, 교사들의 피드백, 전문가 컨설팅 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종 프로그램 수정·보완</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참여자 (만 3세~5세 유아)의 발달단계 등을 충분히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li> <li>● 유아교육을 위한 안전한 공간 확보 및 안전계획 마련 필요</li> </ul>	

## 2. 영·유아 교육기관 모집 및 관리

### 가. 홍보계획

구분	구성 내용	비고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터 및 리플렛 디자인 일원화 및 기관별 인쇄</li> <li>- 시설 내 비치 및 배포 등</li> </ul>	-
온라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내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및 홈페이지 개재</li> <li>- 문화시설 홈페이지 연동 및 사업 안내</li> </ul>	-

1) 코로나 19로 여파로 인해 사업기간 축소. 이에 따른 교육기관대상 수를 기존 25개 기관 에서 15개 기관으로 수정 변경함.

2) 코로나 19로 여파로 인해 사업기간 축소. 이에 따른 연수 횟수는 재단과 협의하여 축소 가능하나 15시수는 변동 없음.

## 나. 운영기준

- 영·유아 활동 기관 수: 총 15개 이상 기관 (※1개소 × 15개 기관 이상)
- 프로그램 참여자: 총 300명 이상
- ※ 체험형의 경우 1회 이상 필수, 문화시설의 주요 공간을 활용하여 수업 운영

## 다. 유아기관 및 교사 대상 협조 사항

- 사전·사후 활동지 수행 지도
- 인솔교사 1인 이상 프로그램 필수 참여
- 교육 운영 시 해당 담임교사가 보조강사 역할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현장사진촬영 등 관련업무 협조

## 3. 유아교사 연수 운영

### 가. 교수법 개발

- 기존의 영·유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교수법 개발
- 유아대상으로 개발한 콘텐츠를 유아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구성
- 교사지도안 제작

### 나. 운영기준

- 방학 시기 활용
- 총 15시수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 구성
- 1회 당 유아교사 총 15명 내외 연수 운영

## 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구분	자격요건	프로그램 내 주요역할
주강사	-프로그램 주요 장르 관련 예술가 -유아대상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자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보조강사	-프로그램 주요 장르 관련 예술가 또는 유아 관련 전문가 -유아대상 프로그램 보조 가능자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보조
비고	-관련학과, 교직이수, 관련 자격증 소지자(문화예술교육사, 보육교사, 교원 자격증 등) 우대 및 적극 활용	

## 5.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협조

###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 참여 진행

-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 컨설팅 결과를 수용한 최종 프로그램 도출.
- 방문 일정 등 기타 상세 사항은 기관에 사전 공지토록 함.

## 6. 기타사업 운영 및 관리

- 각종 워크숍, 결과 공유회, 간담회 등 적극 참여
- 참여 유아교육 기관,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자료집 제작 및 제출
- 본 사업 홍보를 위한 사진, 영상 촬영 및 인터뷰 협조

## III 공모 접수 및 안내

### ○ 공고 및 접수

- 2020년 3월 6일 (금)~ 3월 30일(월) 17시까지

### ○ 접수 방법

- 전자 공문접수 (※단, 전자공문 발송이 불가능한 시설은 [artsedu17@bscf.or.kr](mailto:artsedu17@bscf.or.kr)로 이메일 접수)

###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hwp 파일형태) 1부
- 운영시설 법정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jpg파일형태) 1부
- 업무협력협약서(별도의 양식 없음) 1부

### ○ 신청 시 유의 사항

- 제출 시 파일 제목은 ‘2020년 유아 공모신청서(기관 또는 단체명)’ 으로 작성바랍니다. (예); 2020년 유아 공모신청서 (ABC미술관)
- 공모신청서 제출 시 직인(도장)必, 서류작성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관(단체)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 첨부 시 용량(사진, 그림파일 등)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공모신청 지정양식 외, 자유양식이 신청서 작성 불가합니다.
- 전년도 지원사업 사업 행정평가 등에 감점, 경고 조치가 가해진 기관의 경

- 우 선정 제한 적용하나 미 정산 시설 또는 단체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선정이 확정되더라도 허위 사실 판명 시 취소 가능).

## IV 심의 절차 및 기준

### 1. 심의 절차

#### 가. 심의방법

- 서류 및 인터뷰 심의 동시 진행
- 심의 시 문화시설 사업 실무 담당자 및 컨소시엄 단체 대표 필수 참석

나. 심의위원: 문화예술교육, 유아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위원 3~5인 이내 구성

다. 심의 및 결과 발표: 2020년 4월 예정

### 2. 심의 기준

세부영역	심사지표	배점
이해도	-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이해도 - 사업 목표와 세부추진 전략과의 부합도	20
전문성	- 유사사업 실적(내용/수준 등) - 프로그램 개발진의 역량 및 전문성	20
실현성	- 프로그램의 보급·확산 의지 - 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의 실현성 - 예산규모 및 편성의 적절성	20
내용의 차별성	- 유아의 발달 단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의 적절성 - 기존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 새로운 예술교육 및 미적체험 프로그램 개발 제안 - 해당 시설의 고유한 예술장르 반영 여부	20
운영자원	- 유아 교육환경의 적절성 - 기관 규모 및 시설의 안정성 - 기관이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콘텐츠 유무 - 참여 인력 역할 분담 및 사업 관리 체계 적절성	20
합계		100

### 3. 선정 고려사항

- 인력파견 중심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사업 기획
- 행사 중심의 1회성 사업 및 반복 학습을 통한 단순 기능교육 지양
-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 지원이 가능한 시설

- 참여기관 및 교육강사 모집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 실행방안과 자원 확보 여부
- 유아의 발달단계,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및 안전 공간 확보 필수
-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유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프로그램 개발진 전문성 확보 필수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본 방향에 부합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



# [붙임 1.] 2020년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기준

※ 예산계획 수립 시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획 수립

(단위: 천 원)

목	세	세세목	내 용	집행 방법	비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강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비는 교육 회차 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li> <li>※ 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5시간까지 책정 가능</li> <li>- 강사비 중복 지급 불가</li> <li>-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li> </ul> </li> <li>○ 모든 인건비 및 사례비 중복 지급 불가하며 원천세(사업소득 or 기타소득, 근로소득X) 납부 및 납부영수증 증빙 필수</li> </ul>	계좌 이체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개발(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유아교사 연수) 연구진 인건비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자 격</th> <th>역 할</th> <th>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책임연구원</td> <td>부교수 수준</td> <td>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td> <td>월 3,229,730원</td> </tr> <tr> <td>연구원</td> <td>대학 조교수 수준</td> <td>책임연구원 보조</td> <td>월 2,476,514원</td> </tr> <tr> <td>연구보조원</td> <td>대학 조교 수준</td> <td>통계처리, 번역 등</td> <td>월 1,655,466원</td> </tr> <tr> <td>보 조 원</td> <td></td> <td>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td> <td>월 1,241,642원</td> </tr> </tbody> </table> </li> <li>○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따른 2020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 증감 가능</li> <li>※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강사비,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li> </ul> </li> </ul>	구 분	자 격	역 할	지급금액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3,229,730원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655,466원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241,642원	계좌 이체	
		구 분	자 격	역 할	지급금액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3,229,730원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655,466원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241,642원																						
자문료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수당(기준)</th> <th>지급기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자문료</td> <td>기본료</td> <td>·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자문회의</td> <td>·기본:2시간 기준</td> </tr> <tr> <td>100,000원 초과 50,000원</td> <td>·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회의</td> <td>·2시간 초과시 초과분 지급(최대 1일 1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li> <li>○ 모든 인건비 및 사례비 중복 지급 불가하며 원천세(사업소득 or 기타소득, 근로소득X) 납부 및 납부영수증 증빙 필수</li> </ul>	구 분	수당(기준)	지급기준	비고	자문료	기본료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자문회의	·기본:2시간 기준	100,000원 초과 50,000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회의	·2시간 초과시 초과분 지급(최대 1일 1회)	계좌 이체												
구 분	수당(기준)	지급기준	비고																						
자문료	기본료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자문회의	·기본:2시간 기준																						
	100,000원 초과 50,000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회의	·2시간 초과시 초과분 지급(최대 1일 1회)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등급</th> <th>지급금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편곡</td> <td>1등급</td> <td>500,000원/곡</td> <td>*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td> </tr> <tr> <td>2등급</td> <td>400,000원/곡</td> <td>*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td> </tr> <tr> <td>3등급</td> <td>300,000원/곡</td> <td>*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시 경우 원편곡의 1/2만 지급</td> </tr> <tr> <td>작곡</td> <td colspan="3">*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td> </tr> <tr> <td>감수료</td> <td>등급무관</td> <td>50,000원</td> <td>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li> <li>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li> <li>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li> <li>※ 감수료는 자부담 편성</li> </ul>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2등급	400,000원/곡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3등급	300,000원/곡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시 경우 원편곡의 1/2만 지급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계좌 이체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2등급	400,000원/곡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3등급	300,000원/곡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시 경우 원편곡의 1/2만 지급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인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li> <li>※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 필수 첨부</li> <li>※ 기념품 제작 불가</li> </ul> </li> </ul>	카드 집행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재 및 악기 등 비소모성 물품은 자산취득으로 간주 될 수 있는 물품은 구입불가하며, 반드시 대여하여 진행하여야 함.</li> </ul> </li> </ul>	카드 집행																							

목	세	세세목	내 용	집행 방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li> <li>※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 필수 제출.</li> <li>※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 금지</li> <li>※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금지</li> </ul> </li> <li>-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li> </ul>																																						
		회계 검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 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금액</th> <th>수수료</th> <th>기준 금액</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미만</td> <td>336,000</td> <td>2억원 이상~3억원 미만</td> <td>894,000</td> </tr> <tr> <td>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td> <td>365,000</td> <td>3억원 이상~4억원 미만</td> <td>940,000</td> </tr> <tr> <td>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td> <td>505,000</td> <td>4억원 이상~5억원 미만</td> <td>985,000</td> </tr> <tr> <td>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td> <td>547,000</td> <td>5억원 이상~6억원 미만</td> <td>1,147,000</td> </tr> <tr> <td>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td> <td>590,000</td> <td>6억원 이상~7억원 미만</td> <td>1,189,000</td> </tr> <tr> <td>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td> <td>632,000</td> <td>7억원 이상~8억원 미만</td> <td>1,231,000</td> </tr> <tr> <td>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td> <td>674,000</td> <td>8억원 이상~9억원 미만</td> <td>1,274,000</td> </tr> <tr> <td>1억원 이상~2억원 미만</td> <td>848,000</td> <td>9억원 이상~10억원 미만</td> <td>1,315,000</td> </tr> </tbody> </table>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4천만원 미만	336,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40,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985,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1,147,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6억원 이상~7억원 미만	1,189,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7억원 이상~8억원 미만	1,231,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8억원 이상~9억원 미만	1,274,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9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315,000	계좌 이체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4천만원 미만	336,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40,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985,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1,147,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6억원 이상~7억원 미만	1,189,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7억원 이상~8억원 미만	1,231,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8억원 이상~9억원 미만	1,274,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9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315,000																																						
공공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보험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공간 및 교육참여자 대상 보험가입 필수이며, 교육장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재단과 상의하여 결정 (야외활동의 경우 보험가입 필수)</li> <li>- 퀵서비스 불가</li> </ul> </li> <li>○ 소득세 종업원분</li> </ul>	카드 집행, 계좌 이체																																						
임차비 (07)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재 임차 : 비소모성 물품은 구입이 아닌 대여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소모성 물품 구입 시, 재단과 사전협의 하에 진행</li> </ul> </li> </ul>	카드 집행																																						
일반 용역료 (14)	외주 업체 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계약서 작성 필수</li> <li>※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 필수 제출</li> </ul> </li> </ul>	카드 집행, 계좌 이체																																						
복지 후생비 (12)	4대보험 기관 부담금 급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li> <li>○ 문화시설 지급기준 의거</li> </ul>	계좌 이체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li> <li>○ 회의식비 기준단가 : 10,000원 / 1인 1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과비, 식비 중복사용불가.</li> <li>※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li> <li>※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회의식비가 사업비의 10% 이상 일 경우, 재단 담당자가 상세 산출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역 불충분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li> </ul> </li> </ul>	카드 집행																																						
	교육 대상 다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대상 참여자를 위한 다과비는 1인당 최대 5,000원 까지 집행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당일 참여하는 강사 포함한 금액으로 편성 가능</li> </ul> </li> </ul>	카드 집행																																						
인건비 (110)	상용 임금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전담인력에 관한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기간, 근로조건 등은 사업 운영기간 내 운영기관 내규에 준하여 책정</li> <li>※ 시간외수당 및 기타 제수당 예산범위 내 책정 가능</li> <li>※ 전체 사업비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인원 및 역할분담 고려 필요</li> </ul> </li> </ul>	계좌 이체																																						

목	세	세세목	내 용	집행 방법	비고
			○ 모든 인건비 및 사례비 중복 지급 불가하며 원천세(사업소득 or 기타소득, 근로소득X) 납부 및 납부영수증 증빙 필수		
	일용 임금 (04)	보조 인력	○ 최대 1일 8시간, 68,720원 적용 -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적용 - 연간 30일 이내 활용 - 보조인력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맞게 책정	계좌 이체	